



제43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및  
자원봉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0호)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2  |
| III. 검토의견 .....                 | 6  |
|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             | 6  |
| 2. 총괄적 검토 .....                 | 8  |
| 3. 주요 조문별 검토 .....              | 10 |
| 가. 법률 제명 및 목적·기본원칙 .....        | 10 |
| 나.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 .....           | 13 |
| 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15 |
| 라.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          | 18 |
| 마.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포상 및 인력 양성 ..... | 21 |
| 바. 자원봉사자 손해보상 및 국가배상책임 .....    | 24 |

|                             |    |
|-----------------------------|----|
| 사. 국공유재산 특례 확대 .....        | 29 |
| 아. 자원봉사센터 .....             | 32 |
| 자.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 | 36 |
| 차. 자원봉사관리시스템 .....          | 38 |

## I . 제안경위

### 【이성권의원안】

1. 발 의 자 : 이성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5.
3. 회부연월일 : 2025. 12. 8.

### 【신정훈의원안】

1.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2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5.
3. 회부연월일 : 2025. 12. 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이성권의원안】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 【신정훈의원안】

### 제안이유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흥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주로 인프라 확충 부분에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어렵고, 센터의 운영 또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공익을 위해 활동함에도 법적·재정적 위험을 자원봉사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 나. 자원봉사자의 범위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주체를 시민으로 개정하고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
- 다. 광역시·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하여 시·도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마.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입은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법적·재정적 부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제5항 신설).
- 바. 자원봉사 관리 직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관계 행정부처가 국가직

무능력표준이 개발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현행법에  
포섭함(안 제15조).

사.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양  
성, 채용, 포상 등 처우를 보장하여 검증된 전문인력이 시민의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함  
(안 제15조의2 신설).

아.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  
용을 허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는 바, 자원봉  
사센터의 직접적·공적 역할과 재원의 한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따른 무상대여·사용 근거를 마  
련함(안 제16조).

자.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민간주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외 사항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을 지양하고 점진적으  
로 민간 운영형태로 전환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자원봉사활동 진흥기관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지위를 분명  
히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  
행정 지역명의 자원봉사센터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카.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안 제19조의4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활동 인구는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2017년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2012년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임.

#### [ 자원봉사 현황 ]

(단위 : 명, 회, 시간, 개)

| 구 분               | 2007년     | 2012년      | 2017년      | 2022년      | 2025년      |
|-------------------|-----------|------------|------------|------------|------------|
| 연인원(누적)           | 8,944,772 | 18,652,383 | 31,382,487 | 14,879,841 | 18,328,005 |
| 실인원               | 995,870   | 2,163,174  | 4,876,669  | 1,906,936  | 2,194,155  |
| 1인당 연간<br>평균 봉사횟수 | 9.0       | 8.6        | 6.4        | 7.8        | 8.4        |
| 자원봉사단체            | 40,344    | 70,465     | 38,895     | 19,093     | 20,503     |

※ 연인원 : 연간 자원봉사 활동 인원 수(누적)

실인원 : 연간 자원봉사 활동 인원 중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인원 수

1인당 연간 평균 봉사횟수 : 연인원 / 실인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시간 : 총 봉사시간 / 실인원

※ 자료 :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 봉사정보 - 자원봉사 통계

이는 법 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고 자원봉사 내용·형식이 다양해지는 등 자원봉사를 둘러싼 사회·문화 환경이 변화하였으나 현행 법률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법률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sup>1)</sup>

그러므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산하고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여 자원봉사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됨.<sup>2)</sup>

정부도 ‘2025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부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sup>3)</sup>

이에 개정안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명, 목적 규정(제1조), 국가 기본계획(제9조)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변경하여 자원봉사의 개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음.

---

1) (사)한국자원봉사학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 2024.

2)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사)한국자원봉사학회,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제안」, 2024.

3)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2025.10.14.)

## 2. 총괄적 검토

이성권의원안은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바꾸며, ‘기부금품의 접수’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2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법률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이고,

신정훈의원안은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21개 조문 중 11개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며 4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 및 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개정사항]

| 현행                          | 이성권의원안        | 신정훈의원안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기본법       | 자원봉사기본법                    |
| 제1조(목적)                     | -             |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
| 제2조(기본 방향)                  | 국민 → 개인 또는 사람 | 국민 → 시민                    |
|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 -             | 제14조 제외                    |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 포지티브 방식 → 네거티브 방식          |
| 제9조(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             | 지자체 장과 협의<br>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
| 제12조(포상)                    | -             | 자원봉사관리자 포상                 |

| 현행                    | 이성권의원안      | 신정훈의원안                                        |
|-----------------------|-------------|-----------------------------------------------|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           | 자원봉사자 손해 지원·보상<br>자원봉사자 국가배상책임<br>및 구상권 행사 금지 |
| 제15조(자원봉사 관리)         | -           |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
| <신설>                  | -           |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                               |
|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 -           | 무상대여·사용 요건 완화                                 |
|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 -           | 설립 요건 명시                                      |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직접운영 조항 삭제  | 직접운영 조항 삭제<br>전문인력 채용 신설                      |
| <신설>                  | -           | 자원봉사센터 명칭                                     |
| <신설>                  | 기부금품 접수 특례  | 기부금품 접수 특례                                    |
| <신설>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 자원봉사관리시스템                                     |

### 3. 주요 조문별 검토

#### 가. 법률 제명 및 목적·기본원칙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의 “자원봉사활동” 문구를 “자원봉사”로 하며, 기본 방향 규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에서 “시민”, “개인”, “사람” 등으로 바꾸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 제명 및 제2조제1호, 신정훈의원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현행                                                                                                                                                                                                                                  | 이성권의원안                                                                                                       | 신정훈의원안                                                                                                                    |
|-------------------------------------------------------------------------------------------------------------------------------------------------------------------------------------------------------------------------------------|--------------------------------------------------------------------------------------------------------------|---------------------------------------------------------------------------------------------------------------------------|
| <p><u>자원봉사활동</u> 기본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u>자원봉사활동</u>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p> <p>1. 자원봉사활동은 <u>국민의</u>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p> | <p><u>자원봉사</u>기본법</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기본 방향) -----</p> <p>1. -----</p> <p><u>개인</u>의-----</p> | <p><u>자원봉사</u>기본법</p> <p>제1조(목적) -----<u>자원봉사</u>-----</p> <p>제2조(기본 방향) -----</p> <p>1. -----</p> <p><u>시민</u>의-----</p> |

|                                                                                                         |                                                                |                                                                                         |
|---------------------------------------------------------------------------------------------------------|----------------------------------------------------------------|-----------------------------------------------------------------------------------------|
| 수 있는 방향으로<br>추진하여야 한다.                                                                                  | -----<br>-----.                                                | -----<br>-----.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 3. 모든 국민은 나이,<br>성별, 장애, 지역,<br><u>학력 등 사회적 배</u><br>경에 관계없이 누<br>구든지 자원봉사활<br>동에 참여할 수 있<br>도록 하여야 한다. | 3. ----- <u>사람은</u> -----<br>-----<br>-----<br>-----<br>-----. | 3. ----- <u>시민은</u> -----<br>-----<br><u>학력, 인종 등</u> -----<br>-----<br>-----<br>-----. |
| 4.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개정안들은 이 법의 기본 용어인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변경하면서 법률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꾸고 법률 본문의 “자원봉사활동” 표현 중 일부를 “자원봉사”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자원봉사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sup>4)</sup>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자원봉사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sup>5)</sup>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의 다양성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이나 “사람”, “시민” 등으로 변경하여, 외국국적 이주민 등 사회구성원 전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한국자원봉사학회, 앞의 글.

체를 포괄하고 국경을 넘어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6개 지역)’ ‘글로벌빌리지센터(7개 지역)’, ‘서울글로벌센터’ 등에서 글로벌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자원봉사자로서 유학생이나 외국국적 이주민, 지역 주민 등에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들은 법률의 “자원봉사활동” 표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원봉사”로 개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표현에는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의 문구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면, 목적(제1조)과 기본 방향(제2조) 규정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자원봉사의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자원봉사”의 진흥으로 바꾸는 것도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만 정의하고 있으나 “자원봉사”를 정의한 뒤 그 내용에 ‘재능기부나 지식, 기술을 제공’에 관한 사항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

개정안은 정치활동 등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등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에 한하여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신정훈의원안 제5조)

| 현행                                                                                                                                                                       | 신정훈의원안                                                                                      |
|--------------------------------------------------------------------------------------------------------------------------------------------------------------------------|---------------------------------------------------------------------------------------------|
|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br>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br>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br>제18조-----<br>-----<br>-----<br>-----<br>-----<br>---.<br>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신정훈의원안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는 제5조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14조의 내용이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가등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사실상 모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조제2항은 자원봉사활동의 ‘비정파성(非政派性)’을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고,<sup>6)</sup> 금지 대상인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7)</sup>

---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7) (사)한국자원봉사학회, 앞의 글.

## 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영리적 활동, 정파적 활동, 종파적 활동 등을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신정훈의원안 제7조).

| 현행                                                                                                                                                                                                                                                                                                                                                                                                                                                                                                                              | 신정훈의원안                                                                                              |
|---------------------------------------------------------------------------------------------------------------------------------------------------------------------------------------------------------------------------------------------------------------------------------------------------------------------------------------------------------------------------------------------------------------------------------------------------------------------------------------------------------------------------------|-----------------------------------------------------------------------------------------------------|
| <p>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u>자원봉사활동의 범위</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u></li> <li>2. <u>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u></li> <li>3. <u>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u></li> <li>4. <u>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u></li> <li>5. <u>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u></li> <li>6. <u>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u></li> <li>7. <u>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u></li> <li>8. <u>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u></li> <li>9. <u>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u></li> <li>10. <u>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u></li> </ol> | <p>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u>자원봉사활동</u>은 <u>영리적 활동, 정파적 활동, 종파적 활동 등을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
|---------------------------------------------------------------------------------------------------------------------------------------------------------------------------------------------|--|
| 11. <u>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br/>관한 활동</u><br>12. <u>공명선거에 관한 활동</u><br>13. <u>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u><br>14. <u>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br/>관한 활동</u><br>15. <u>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br/>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br/>활동</u> |  |
|---------------------------------------------------------------------------------------------------------------------------------------------------------------------------------------------|--|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현행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정 방식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활동을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정 방식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등 14개 분야를 열거하고,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sup>8)</sup>

####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그런데 온라인을 통한 기부, 캠페인, 봉사 등 자원봉사의 영역이 확대되어 기존의 열거방식이 실제 자원봉사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데 한계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음.<sup>9)</sup>

이에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에서 제외되는 영역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적용범위에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법률에서는 네거티브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의 규정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인지 네거티브 방식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네거티브 규정 방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영리적 활동, 정파적 활동, 종파적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한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영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9) (사)한국자원봉사학회, 앞의 글.

## 라.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명칭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계획 수립시 협의 대상에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신정훈의원안 제9조).

| 현행                                                                                                                 | 신정훈의원안                                                                                                               |
|--------------------------------------------------------------------------------------------------------------------|----------------------------------------------------------------------------------------------------------------------|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br>-----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br>-----자원봉사 진흥-----<br>-----<br>-----.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 1. 자원봉사 진흥-----<br>-----                                                                                             |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 2. 자원봉사 진흥-----<br>-----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자원봉사-----                                                                                    |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 4. 자원봉사 진흥-----<br>-----                                                                                             |
|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 -----자원봉사-----<br>-----<br>-----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0)</sup>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달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시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의견과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sup>11)</sup>

---

1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자원봉사활동 진흥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포상 및 인력 양성

개정안은 포상의 대상에 “자원봉사관리자”를 포함하고, 자원봉사관리자 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신정훈의원안 제12조 및 제15조의2).

| 현행                                                                                                                                    | 신정훈의원안                                                                                                                                                                                                                                                                                                                                                                           |
|---------------------------------------------------------------------------------------------------------------------------------------|----------------------------------------------------------------------------------------------------------------------------------------------------------------------------------------------------------------------------------------------------------------------------------------------------------------------------------------------------------------------------------|
|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u>자원봉사센터</u>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br><u>&lt;신설&gt;</u> | 제12조(포상) -----<br>-----<br>-----<br>----- <u>자원봉사센터,</u><br><u>자원봉사관리자</u> -----<br>-----.<br>제15조의2(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u><br>② <u>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br>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br>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로 예시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개최하여 국민·기관 추천을 받아 자원봉사자 등 개인과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개인 184명, 31개 단체, 12개 기업 및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에 상훈 및 표창을 수여하였음.

한편, 자원봉사관리자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리와 자원봉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현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교육 이수 및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을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2)</sup>

또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2023~2027)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 유공자”로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를 규정하면서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부문에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 도입, 관리자 역량 강화, 보수교육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등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 자원봉사관리자의 기여·역할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포상의 대상에 자원봉사관리자를 명시함으로써 자원

---

12)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홈페이지 - 자격과정 - 자원봉사관리자 자격과정, [http://www.kfvc.or.kr/contents/sub09/sub09\\_01.html](http://www.kfvc.or.kr/contents/sub09/sub09_01.html), 2026.01.28. 최종확인.

봉사관리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의무와 전문 자격제도의 도입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포상 규정(신정훈의원안 제12조)과 자원봉사자의 보호 규정(신정훈의원안 제14조)에 “자원봉사관리자”라는 표현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고, 신정훈의원안 제15조의2에서는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는 다른 법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 표현으로서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자”로 표현을 통일하고 정의 규정(신정훈의원안 제3조)에 “자원봉사관리자”를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전북 남원시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화를 법적 근거에 명시하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울산광역시도 인력 양성 주체를 ‘전문기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되 비용 지원은 ‘국가’로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하였음.

## 바. 자원봉사자 손해보상 및 국가배상책임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입은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자원봉사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금지를 규정함(신정훈의원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현행                                                                  | 신정훈의원안                                                                                               |
|---------------------------------------------------------------------|------------------------------------------------------------------------------------------------------|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u>                       |
| <u>&lt;신설&gt;</u>                                                   |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입은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 및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u> |
| <u>&lt;신설&gt;</u>                                                   |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u>                                                                             |

|  |                                                                                                                                |
|--|--------------------------------------------------------------------------------------------------------------------------------|
|  | <u>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면제받은 자원봉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u> |
|--|--------------------------------------------------------------------------------------------------------------------------------|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와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인권 옹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의 자원봉사자의 피해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배상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의 선택과 의사표현 보장, 현장의 안전, 휴게 시간 및 공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과 폭력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예방 및 대응 방법,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을 확산

시키고 인권침해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대응·환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임.

다만, 자원봉사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보상 및 타인의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규정 등은 자원봉사 참여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원봉사에의 참여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존의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제도를 통해 민간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임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피해에 관하여 별도의 지원·보상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원·보상 등 이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수탁사인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 ‘행정상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sup>13)</sup>

---

13) 「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의 행위는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반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나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sup>14)</sup>

자원봉사활동은 비록 공익을 달성하려는 취지이기는 하나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외형상으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없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민법」 제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생략)

14) 대판 1996. 2. 15. 95다38677 전원합의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750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공무원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달리,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가의 구상권 면제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sup>15)</sup>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손해 지원·보상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도입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보상을 의무화하는 경우 예산 중복, 형평성,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배상 및 구상권 면제와 관련하여서도 자원봉사종합보험에 제3자 배상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예외 없이 구상권을 면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울산광역시<sup>16)</sup>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운영 중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 배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 보험을 활용할 유인이 약화되는 등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예외 없이 구상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15) 한편,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의 보장내역에는 자원봉사자의 배상책임이나 교차배상(자원봉사자 간 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제3자나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

## 사. 국공유재산 특례 확대

개정안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여·사용의 요건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신정훈의원안 제16조).

| 현행                                                                                                                                                                                   | 신정훈의원안                                                                                                                                                                                                                  |
|--------------------------------------------------------------------------------------------------------------------------------------------------------------------------------------|-------------------------------------------------------------------------------------------------------------------------------------------------------------------------------------------------------------------------|
|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면</u>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거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현행법령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국제행사, 재난복구 및 구호,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는 사무실 용도 또는 1년 이상 기간으로 대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sup>16)</sup>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의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여·사용의 요건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으로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국유·공유재산 특례가 확대되는 경우에 민간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부담해야 할 사무실 임차료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전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특례 확대를 통한 공공가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걸쳐 무상 대여·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과도한 특례로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 자원봉사센터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국 단위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 하며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명의 자원봉사센터로 하도록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 및 신정훈의원안 제19조제2항).

| 현 행                                                                                                        | 이성권의원안                           | 신정훈의원안                           |
|------------------------------------------------------------------------------------------------------------|----------------------------------|----------------------------------|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삭 제>                            |
| ③ 국가는 자원봉사                                                                                                 | ③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                   |                                                                                                                                                                                                                                                         |
|----------------------------------------------------------------------------------------------------------------------------------------------------------------------------------|-------------------|---------------------------------------------------------------------------------------------------------------------------------------------------------------------------------------------------------------------------------------------------------|
| <p>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u>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lt;신 설&gt;</u></p> | <p>④ (현행과 같음)</p> | <p>③ <u>자원봉사센터장을 포함한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을 두고, 채용·직무·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9조의2(자원봉사센터의 명칭)</u> ① <u>전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 하고,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명의 자원봉사센터로 명칭한다.</u></p> <p>② <u>행정 지역명이 들어간 동일 명칭을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u></p> |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간지원기관의 성격을 지니는데,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법인 또는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sup>17)</sup>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전체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 직영 113개소, 법인 97개소 및 민간위탁 3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교체되거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저하 등 문제가 지적되었음.<sup>18)</sup>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 설립 또는

---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사)한국자원봉사학회, 앞의 글.

민간위탁 등 민간운영 방식으로 일괄 전환되도록 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민영으로 전환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영 전환을 통한 자율성·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여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민영 전환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구로구 및 대구 서구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공익성·공정성이 보장되는 공공행정 기반의 운영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성남·김포·과천시 등 민간 운영 전환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자. 자원봉사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이성권의원안 제19조의2 신설 및 신정훈의원안 제19조의3 신설).

| 현 행   | 이성권의원안                                                                                                                                                              | 신정훈의원안                                                                                                                                                   |
|-------|---------------------------------------------------------------------------------------------------------------------------------------------------------------------|----------------------------------------------------------------------------------------------------------------------------------------------------------|
| <신 설> |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br>①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br>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br>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br>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하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음.<sup>19)</sup>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를 통해 설치되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고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접수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해당 규정이 다른 법률에 대한 예외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정훈의원안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성권의원안과 같이 접수된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⑤ (생략)

## 차.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 제19조의3 신설 및 신정훈의원안 제19조의4 신설).

| 현 행   | 이성권의원안                                                                                                                                                                                             | 신정훈의원안                                                                                                |
|-------|----------------------------------------------------------------------------------------------------------------------------------------------------------------------------------------------------|-------------------------------------------------------------------------------------------------------|
| <신 설> | 제19조의3(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br>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 제19조의4(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단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위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자원봉사 모집정보, 실적 확인, 활동기관 정보, 자원봉사 통계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365자원봉사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의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이나 ‘성평등가족부의 DOVOL(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 등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타기관에서 운영중인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자료 및 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3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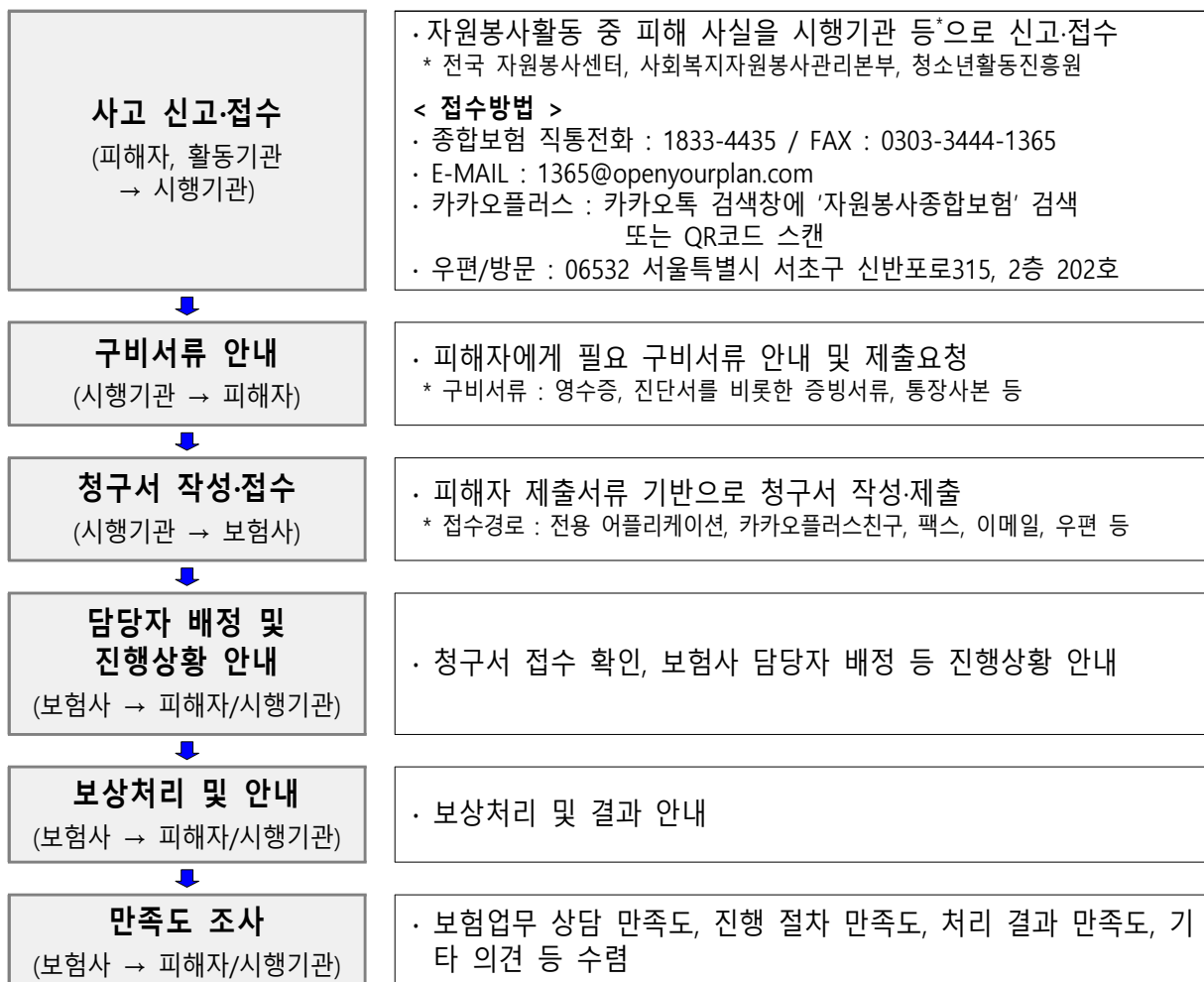
## 참고 1

##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주요내용

### □ 개 요

- **(추진배경)**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의 봉사활동을 보장  
※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시행기관)** 246개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 **(보장기간)** 2025.5.1. 00:00 ~ 2026.4.30. 24:00 / 1년간
- **(소요예산/보험사)** 2,613백만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 보험금 청구 절차



## 참고 2

##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

(단위 : 원)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 상해사망           | 2억      |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15세미만 제외) (침몰사고 사망 포함)                  |
| 상해후유장해         | 최대 2억   |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상해입원일당         | 7만      | 우연한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 상해통원일당         | 5만      |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30일 한도)                |
| 온열/한랭 진단비(신규)  | 50만     | 담보하는 온열/한랭 질환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
| 온열/한랭 입원일당(신규) | 5만      | 담보하는 온열/한랭 질환으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보상(5일한도)                               |
| 화상진단비          | 200만    |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
| 골절진단비          | 200만    |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포함)    |
| 화상수술비          | 200만    |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골절수술비          | 200만    |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 시 보상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5억      |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상해흉터 성형수술비     | 최대 500만 |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수술 시행 시 보상(1cm당 14만원, 500만원 한도)           |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500만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으로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 성폭력범죄 보상금      | 1천만     | 약관에 기재된 성폭력범죄 피해 발생 시 보상                                           |
| 의사상자 상해위험      | 2억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 특정전염병 보상금      | 100만    |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 최대 2억   | 우연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
| 주최자배상(영업배상)    | 최대 5억   |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 및 워크숍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

| 보장내역                  |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 교차배상                  |      | 최대 2억       | 자원봉사자 간에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
|                       |      | 최대 5억       |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워크숍 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비용 보장   |      | 최대 50만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비용 보장                                                                    |
| 구내치료비(자연재해)           |      | 최대 1억       |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치료비 보상(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센터 주관 행사 및 워크숍 포함)                                                     |
|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      | 최대 1천만      | 정신적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제기할 경우 법률비용 지원(자기부담금 : 방어소송 0원, 공격소송 5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 5억<br>최대 5억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      | 2억          |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감염병 제외)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 최대 5천만      | 자동차(이륜 제외) 사고로 제3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원(사망 시 5천, 부상 시 최대 5천, 후유장해 시 최대 3천)                         |
| 생산물 배상책임              | 사고당  | 5억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보상 |
|                       | 보상한도 | 10억         |                                                                                                            |
|                       | 자기부담 | 30만         |                                                                                                            |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사고당  | 2억          |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 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                       | 보상한도 | 10억         |                                                                                                            |
|                       | 자기부담 | 1천만         |                                                                                                            |

### 참고 3

### 1365자원봉사포털 현황

#### □ 운영 개요

- (규모) 회원 수 1,470만명('21.12.31.기준), 하루 평균 접속자 수 18만명 이상의 국내 최대 자원봉사포털
- (자원봉사 실적연계) 교육부(NEIS), 복지부(VMS), 여가부(DOVOL), 법무부(TEAMS), 적십자청소년(RCY), 병무청(병무행정정보화시스템) 등
- (유지관리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년 845백만원
- (주요기능) 자원봉사 활동 신청 및 실적확인(일반사용자), 자원봉사 일감 등록(수요처), 봉사기관 관리(지역자원봉사센터)

#### □ 구축 이력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기부포털) 대국민 서비스 개통 : '11.11월  
※ BPR/ISP 수립, 1365자원봉사·기부포털·비영리NPAS 구축('11.3월~11월, 4,512백)
- G-클라우드 전환 데이터 기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등 기능 고도화  
※ 1차-'12.11.~'13.2.(1,315백) / 2차-'16.6.~'17.1.(950백) / 3차-'19.7.~'20.1.(1,080백)
- 기부포털 분라·확대개편,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통 : '21.2월

#### □ 사용자별 주요기능

- (사용자) 자원봉사 일감정보 조회 및 신청, 자원봉사실적 통합조회, 자원봉사활동 승인내역 조회, 개인활동 통계, 사용자 질의 등
- (광역·지역 자원봉사센터) 봉사자회원관리, 수요처 관리, 일감관리 및 봉사자 배치, 봉사실적 승인, 교육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보험관리, 자원봉사활동통계관리, 공지사항 및 게시판 관리 등
- (수요처·캠프) 봉사자회원관리, 일감관리 및 봉사자 배치, 봉사실적 등록, 자원봉사활동통계관리, 공지사항 및 게시판 관리 등